

1. 개정이유

항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운항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를 추가하여 일부 제도 미흡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 등 개별 항공기의 특성과 관리 환경에 따라 기존 1년이던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정보의 제공 및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의 업무를 실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396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기령이 40년을 초과하는 헬리콥터의 경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업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관련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를 추가하여, 영 제2조에 신설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에 대한 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제 2항 신설)

나.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조강도, 비행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설계 변경에 대한 검사를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다. 제작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41조)

라. 지방항공청장이 헬리콥터 기장 등에 대한 운항자격인정(심사)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항자격인정(심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40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48조부터 제157조까지)

마. 기장이 조종사가 가장 낮게 비행할 수 있는 고도[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를 적용하여 비행할 때 지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정한 안전고도(OCA)보다 높게 비행하도록 조종사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181조제1항)

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등이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의 접수 및 허가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0조부터 제202조까지, 제206조제1항 및 제2항, 제222조, 제248조제3항, 제256조, 제30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비행장에서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지 않고 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5조제1항제3호)

아. 항공정보의 종류에 장애물회피고도(OCA)를 추가함(안 제255조제1항제4호)

자.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비행기과정의 지정기준에 헬리콥터 관련 교육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헬리콥터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헬리콥터 과정으로 조정된 교육내용과 시간에 대신하여 비행기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시간을 반영하여 비행기 교육과정 강화함(안 별표 12)

차. 그간 불명확했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수수료의 감면 조건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함(안 별표 4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또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 사용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는 제외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란 엔진구동 양력장치 또는 엔진 추력에 의한 양력에 의존하여 수직이착륙 및 저속 비행이 가능하고, 수평비행 시에는 회전하지 않는 에어포일(non-rotating airfoil) 장치에 의한 양력에 의존하여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말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설계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중량 및 평형 한계

2. 구조 강도

3. 동력장치의 작동

4. 비행 및 운용 특성

5. 그 밖의 감항성 또는 환경 특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설계 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 또는 단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 단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 감항증명이 정지 또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작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헬리콥터: 6개월

3.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대상 항공기: 1년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기간

제128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무원 피로도 누적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법 제56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안전수준이 법 제5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의 안전수준 이상임을 입증할 것

제140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촉을 받은”을 “위촉한”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발간된 항공정보상의 장애물회피고도(OCA)보다 높아야 한다.

제200조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8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이하 “각급부대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로 한다.

제2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

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로 한다.

제20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로 한다.

제2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을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221조제4항 중 “법 제78조제3항”을 “법 제78조제5항”으로 한다.

제222조 중 “지방항공청장”을 각각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각급부대의장”으로 한다.

제22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받은 자(군용비행장에만 한정한다)

제248조제3항 후단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각급부대의장”으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4호 중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를 “장애물회피고도, 결심고도 및 최저강하고도(군용비행장에만 한정한다)”로 한다.

제2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항공청장의”를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

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로 한다.

제308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항공청장은”을 각각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으로 한다.

별표 12 제9호가목의 항공기체의 항공기 구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 구조	50	55	105	10	5	15	-	-	-
--------	----	----	-----	----	---	----	---	---	---

별표 12 제9호가목의 항공기체의 헬리콥터 구조 및 계통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헬리콥터 구조 및 계통	-	-	-	20	25	45	-	-	-
--------------	---	---	---	----	----	----	---	---	---

별표 12 제9호가목의 항공발동기의 왕복엔진일반 및 흡기·배기계통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왕복엔진일반 및 흡기·배기계통	40	50	90	-	-	-	-	-	-
------------------	----	----	----	---	---	---	---	---	---

별표 12 제9호가목의 항공발동기의 헬리콥터 엔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헬리콥터 엔진	-	-	-	20	25	45	-	-	-
---------	---	---	---	----	----	----	---	---	---

별표 36 제1호가목7) 중 “기상최저치”를 “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로 한다.

별표 47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9. 제1호에 따른 변경신청 사항이 경미하여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검

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및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의 앞 쪽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뒤 쪽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의 앞 쪽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뒤 쪽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담당부서”를 “운항자격심사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의 앞 쪽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뒤 쪽 “국토교통부(자격관리 담당부서)”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운항자격심사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74호, 제74호의2, 제74호의3, 제75호, 제84호 및 제1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 제146조제1항 및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장 등의 운항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운항자격인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작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헬
리콥터에 대한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이 6개월 미만 남아있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받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 중대한

[] 경미한

형식설계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30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 항공기	종류				
	형식			형식증명번호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제작일련번호	
	[] 발동기				
[] 프로펠러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제작자주소				
	감항증명번호 (항공기만 해당한다)			감항증명 유효기간 (항공기만 해당한다)	
변 경 사 유					
비 고					

「항공안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제1항, [] 제19조제2항에 따라 [] 중대한, [] 경미한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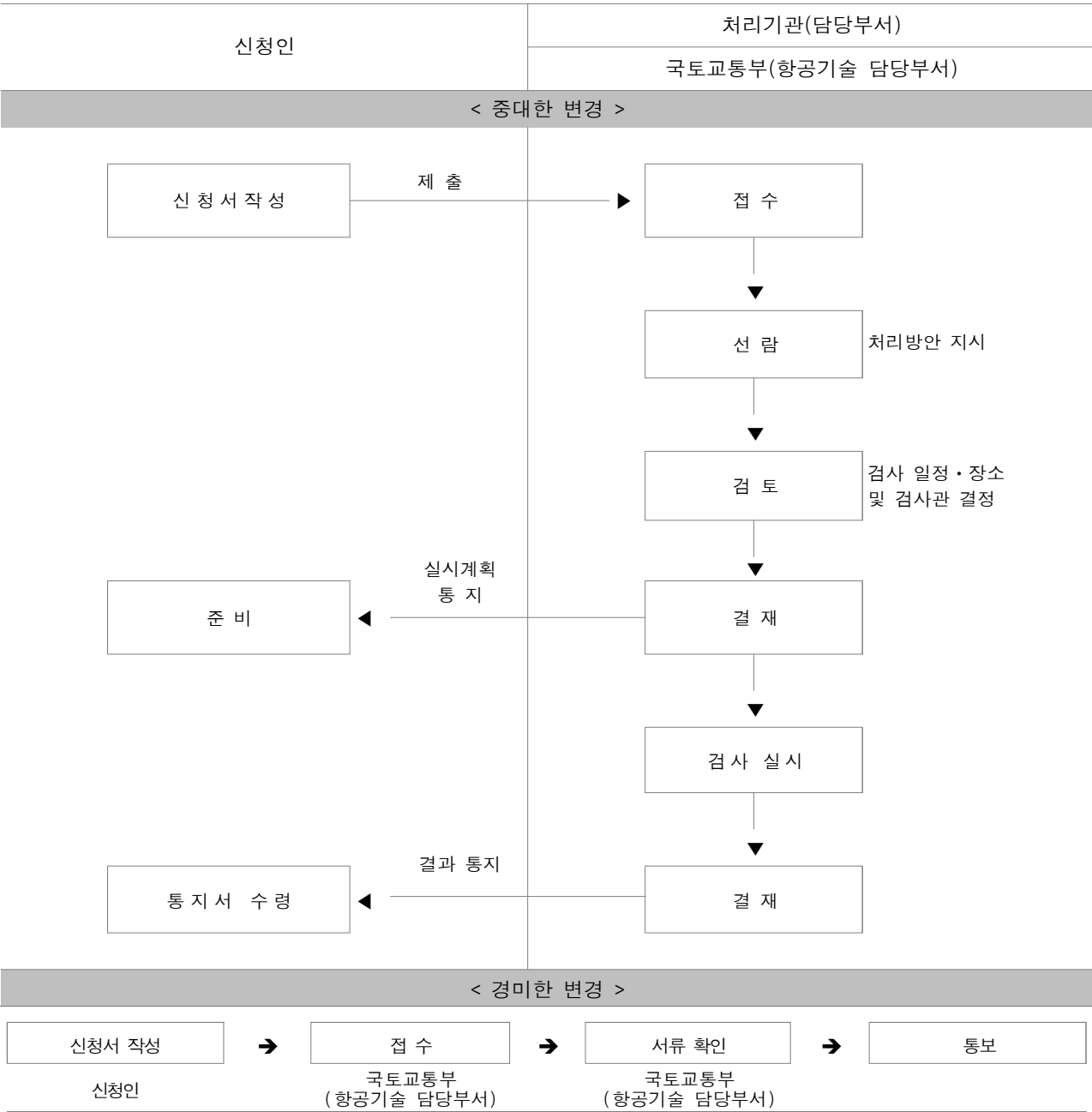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Documents)	1. 형식증명서(copy of Type Certificate) 또는 제한형식증명서(copy of Restricted Type Certificate) 사본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3. 항공기 3면도(The three view drawing of that aircraft)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4.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The description of the engine design features,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limitations)(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Documents in specified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14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항 공 기	형식			등록부호	
비행계획	일시			비행목적	
	경로			고도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조 종 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승의 목적				
특기 사항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항공안전법」 제6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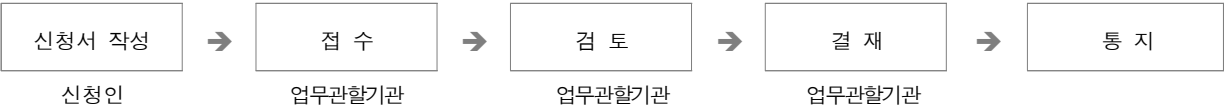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부대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항공기	형식	종별		등록부호
	제조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소유자		탑재무선설비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이착륙 일시	
	비행고도			
	비행경로			
조종사 자격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종류		번호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개요	투하 또는 살포물건의 종류			
	투하 또는 살포의 목적			
	투하 또는 살포의 방법			
	투하 또는 살포의 장소			

「항공안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아
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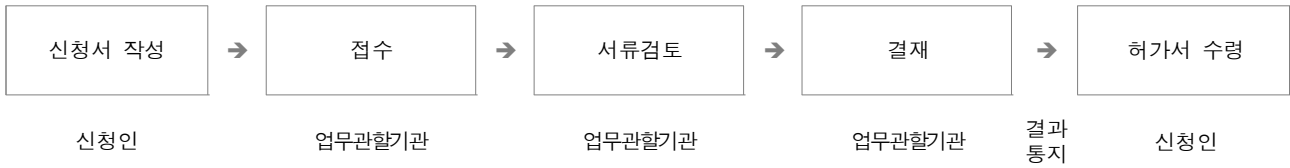
유의사항

1.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부대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 조종사 자격증명서
------	--

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실시간 연락 가능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항공기	형식		종별		등록부호
	제조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소유자		탑재무선설비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이착륙 일시 -		
	비행고도				
	비행경로				
조종사 자격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종류		번호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낙하산 강하 개요	낙하산 강하일시		낙하산형식, 기타 필요사항		
	낙하산강하장소(주소, 좌표, 반경)				
	낙하산 강하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낙하산 종류		낙하산 크기		
「항공안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라 낙하산 강하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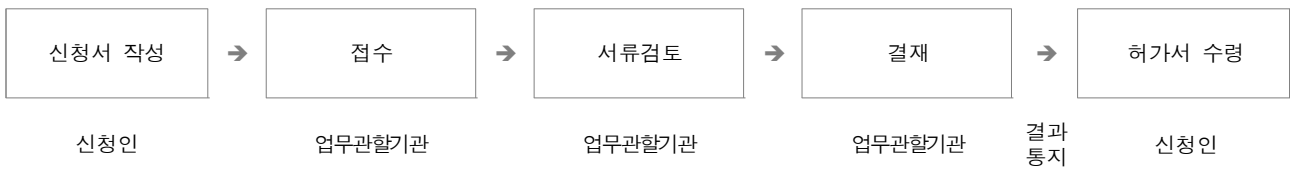
유의사항

1.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부대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1. 비행계획서 및 임시 비행제한구역 지정 공문 2. 낙하산 강하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3. 항공레저스포트사업 등록증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정성인증서 5. 보험가입증명서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항공레저스포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무인항공기 개요	형식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호	
	최대이륙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길이	
	일반 및 최대 상승률			일반 및 최대 강하율	
	일반 및 최대 선회율			최대 항속시간	
	그 밖에 무인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성능에 관한 자료				
통신주파수 및 항행장비 등	대체통신수단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				
	지정된 운용범위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무인항공기의 항행장비 및 감시장비(SSR transponder, ADS-B 등)				
비행계획	일시		비행목적		
	비행규칙의 개요				
	육안식별운항계획(육안식별운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행경로				
	이륙·착륙 장소				
	순항고도·속도		비행주파수		

「항공안전법」 제68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6조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부대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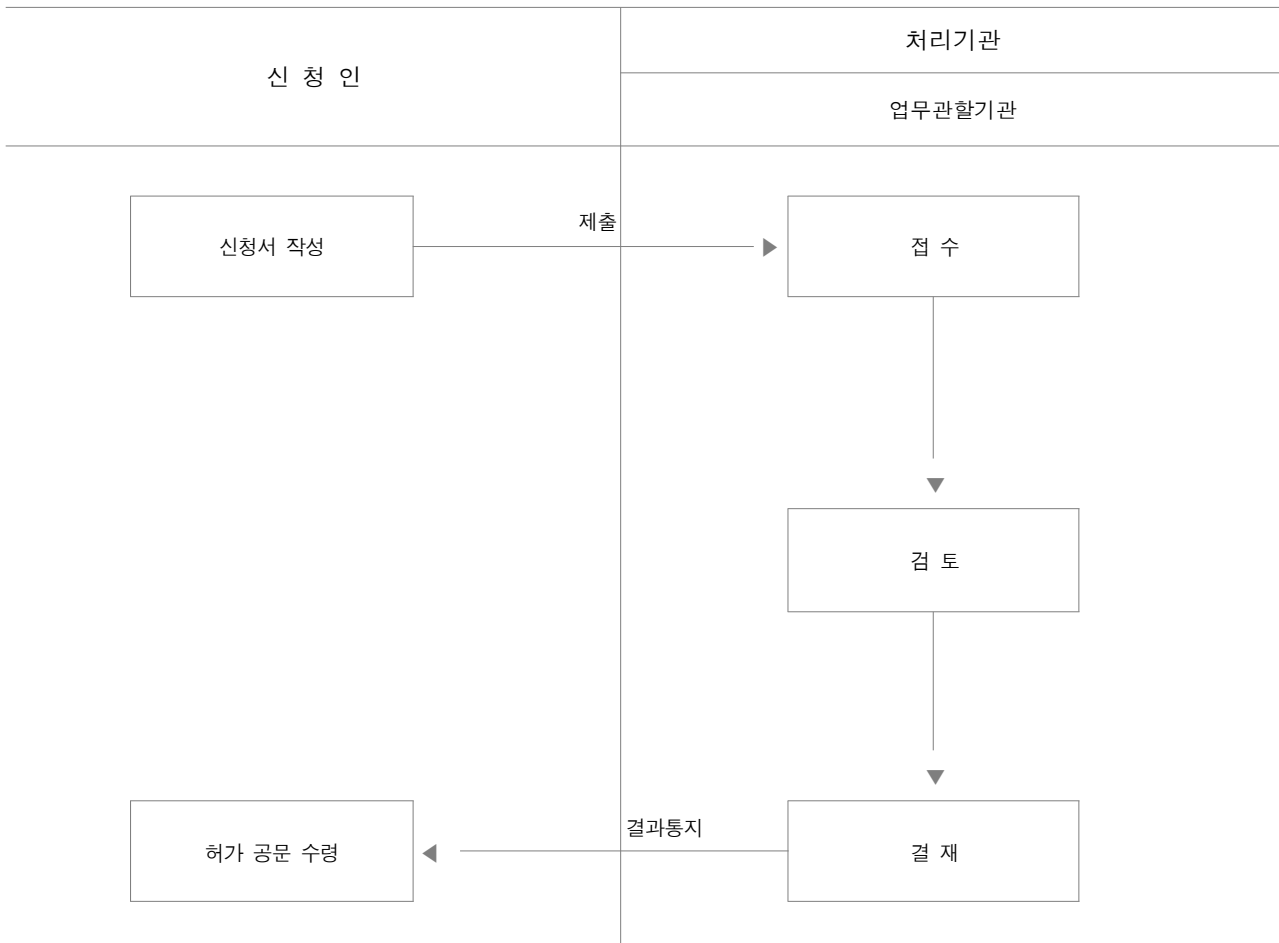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1부 3.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1부 4.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 1부(「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무인항공기의 이륙·착륙 요건 6. 무인항공기의 감지·회피성능 7. 비상절차 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절차 9.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사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0.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11.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 및 하중 등에 관한 정보 12.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제구역 비행허가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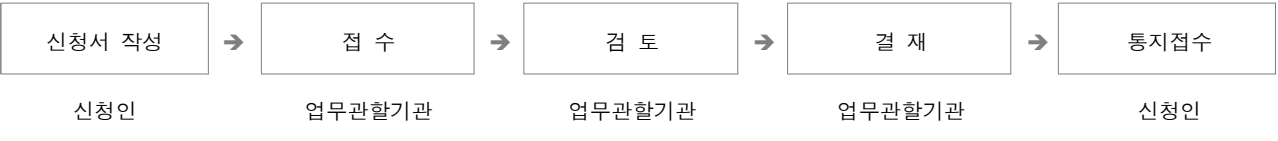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항공기형식		항공기 호출부호		
탑재무선설비의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일시		비행고도	
	비행경로			
조종사	성명		자격	
기타 참고사항				
「항공안전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따라 통제구역의 비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부대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소유자			(전화:)	
	신고번호			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12개월)			구역	
	비행목적/방식			보험 [] 가입 [] 미가입	
	경로/고도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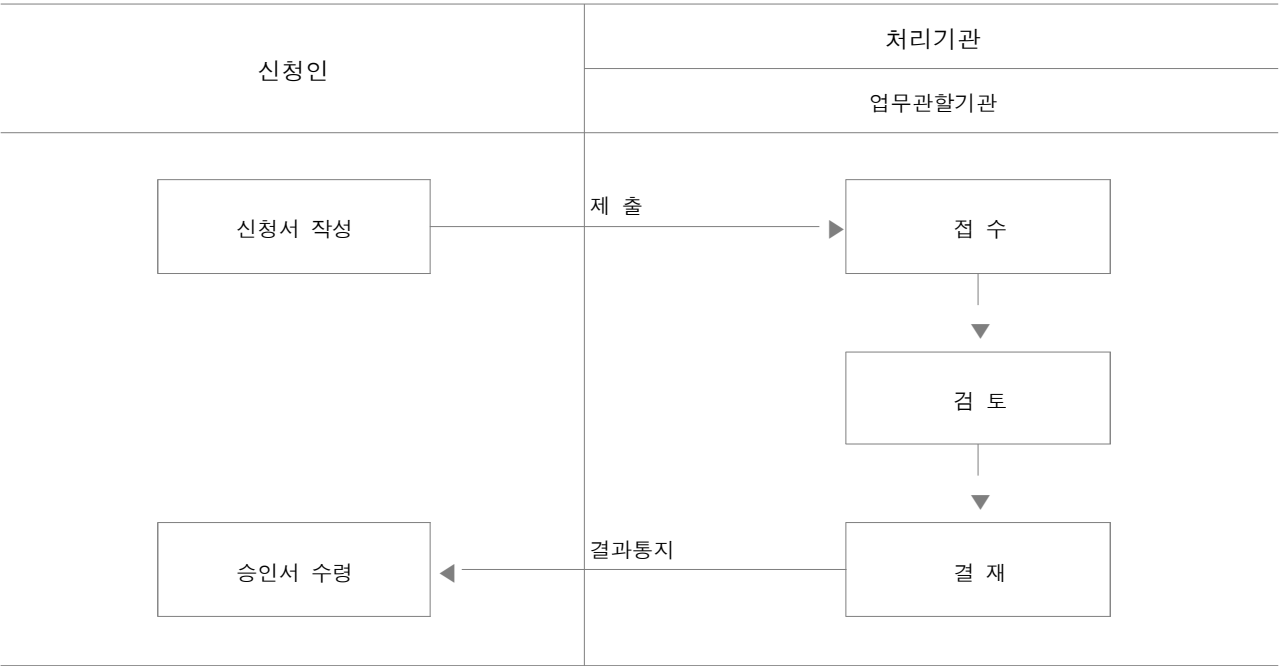
작성방법

-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비행장치란 중 신고번호 또는 안전성인증서번호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이거나 무인비행장치인 경우에는 동승자란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3.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부대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단서 신설> 가. ~ 나. (생략) 2. ~ 3. (생략)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생략) <신설>	제2조(항공기의 기준) (현행과 같음)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다만, <u>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또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 사용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는 제외한다.</u>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영 제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란 엔진구동 양력장치 또는 엔진 추력에 의한 양력에 의존하여 수직이착륙 및 저속 비행이 가능하고, 수평비행 시에는 회전하지 않는 에어포일(non-r</u>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
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생략)

<신설>

<신설>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
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rotating airfoil) 장치에 의한 양
력에 의존하여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말한다.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
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형식설계의 변경사
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중량 및 평형 한계

2. 구조 강도

3. 동력장치의 작동

4. 비행 및 운용 특성

5. 그 밖의 감항성 또는 환경 특
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
설계 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
범위 등) ① -----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를 말한다.

<신설>

-----.

----- 해당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단축)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 감항증명이 정지 또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제2호에 해당

<신 설>

<신 설>

제128조의3(승무원 피로위험관리
시스템의 승인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피로위
험관리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에는 별지 제60호의4서식의 피
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
급해야 한다.

1. 2. (생 략)

3.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
항에 따른 승무시간 등의 기
준의 준수에 따른 피로관리
이상으로 피로가 관리될 수
있을 것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제작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헬리콥터: 6개월

3.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특별감항증명 대상 항공기:
1년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기간

제128조의3(승무원 피로위험관리
시스템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승무원 피로도 누적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
로위험관리시스템의 안전수준
이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방법의 안전수준 이상임을

③ ~ ⑤ (생략) 제140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u>국토교통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① (생략) ② <u>국토교통부장관</u>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에 필요한 심사(이하 “운항자격인정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심사는 제2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u>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u>국토교통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사</u>	<u>입증할 것</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0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 ----- ----- ----- ----- -----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u>-----. 제141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u>----- ----- ----- ----- ----- ----- -----. ③ ----- -----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u> ----- ----- <u>위촉한</u> -----
---	---

람(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과 운항자격인정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9조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심사는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
시심사)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illegible]

④ (현행과 같음)

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
기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
시심사)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1. ~ 9. (생략)

제145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가 제143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43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실을 그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게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6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1. ~ 9. (현행과 같음)

제145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제146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① -----

6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8호서식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47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지나야 지정을 할 수 있다.

⑤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④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⑤ -----

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49조(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은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69호서식의 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관 후보자가 제151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제14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제149조(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①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④ (생 략)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지정하는 경우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위촉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제151조(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심사관등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제152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수시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5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심사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하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심사관을 지명하여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3조(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2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수시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②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③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④ (현행과 같음)

제153조(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1. ~ 4.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자격 심사관으로 하여금 위촉심사관 등이 운항자격인정심사 또는 정기·수시심사를 수행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56조(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에 따른 경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생략)

②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은 매월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1. ~ 4.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제156조(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1. 2. (현행과 같음)

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
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

비행 · 접근 · 착륙 및 이륙) ①

----- . 이 경우 적용하는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발간된 항공정보상의 장애물회피고도(OCA)보다 높아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의 비행허가) -----

--- 지방항공청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8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이하 “각급부대의장”이라 한다)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

----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

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1. ~ 3. (현행과 같음)

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

지방항공청장, 각
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

1. ~ 5. (현행과 같음)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

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비행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18. (생략)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공역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지정절차,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
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
무증명을 받은 자-----
-----.

1. ~ 18. (현행과 같음)

②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8조제5항-----

-----.

제222조(통제구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구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 중인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25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신설>

제222조(통제구역에서의 비행허가) -----

-----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각급부대의장-----.
-----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각급부대의장-----.

제225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받은 자(군용비행장에만 한정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② (생략)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과 지상이동하는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는 <u>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③ ----- ----- ----- ----- ----. ----- ----- <u>지방항공청장 또는 각급부대의 장</u>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55조(항공정보) ①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5조(항공정보)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행의 방법, <u>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u> , 비행장 이륙・착륙 기상 최저치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 <u>장애물회피고도, 결심고도 및 최저강하고도(군용비행장에만 한정한다)</u>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6조(통지사항) 제255조제1항 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제256조(통지사항) ----- -----

행위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

1. ~ 4. (현행과 같음)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

③ 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
-----.

비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비행기간 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u>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u> <u>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u> <u>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④ <u>지방항공청장, 각급부대의장</u> <u>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u> <u>자는</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